

검 토 보 고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8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현재 시세조례는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이 부분적으로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고 지방세법등의 보완적인 기능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조례 정비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등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 일반 조례 표준안에 의거 시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금까지의 정세행정 편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6조)
- 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과세자료의 변동이 있을 때 수정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7조)

다. 보통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 등의
규정 명시(안제2장)

○ 주민세(제1절)

납세의무자(안제2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안제21조),
신고납부(안제23조), 수정신고납부(안제24조)

○ 재산세(제2절)

과세대상(안제25조), 납세의무자(안제2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안제28조)

○ 자동차세(제3절)

납세의무자(안제38조), 과세표준과 세율(안제39조)
납기와 징수방법(안제40조),

○ 농지세(제4절)

납세의무자(안제43조), 과세기간(안제46조), 과세표준(안제47조),
과세표준(안제47조), 세율(안제48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안제52조)

○ 담배소비세(제5절)

과세대상(안제54조), 납세의무자(안제55조), 과세표준(안제56조),
세율(안제57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안제59조),
개·폐업의 신고(안제60조), 신고납부(안제62조)

○ 도축세(제6절)

납세의무자(안제65조)

○ 종합토지세(제7절)

과세대상(안제73조), 납세의무자(안제74조), 과세표준(안제75조),
세율(안제7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안제77조),
공람 및 이의신청(안제82조)

라. 목적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 등의
규정 명시(안제3장)

○ 도시계획세(제1절)

과세표준(안제9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안제91조),
신고의무(안제94조)

○ 사업소세(제2절)

납세의무자(안제96조), 과세표준(안제97조), 납기(안제99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현행 “파주시시세조례”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되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비과세 신청 등의 시세관련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조례의 구성체계가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관계로 주민 및 관계공무원등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및
관계공무원등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충실하게 작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